

# 한국습지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

1998. 12. 제정  
2004. 01. 개정  
2006. 01. 개정  
2009. 12. 개정  
2012. 01. 개정  
2013. 01. 개정  
2016. 01. 개정

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습지학회(Journal of Wetlands Research) 정관 제5조에 의거 구성한 편집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구성 및 위원선정 기준)

1. 위원회는 편집위원장, 분야별로 5명의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을 둔다.
2. 위원장은 습지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술담당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회의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습지 관련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논문 및 저역서 게재, 학술활동 및 대외활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4. 위원장,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.
5.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6.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조 (임무)
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학회 이사회 및 확대회장단 회의에 보고한다.

1. 위원회 활동 계획
  - ㉠ 편집위원회 연간활동 및 관련예산 계획
  - ㉡ 학회지 발간을 위한 논문집 편집 계획
  - ㉢ 기타 학술지에 관련된 사항의 계획
2. 학술지 발간 및 편집
  - ㉠ 투고된 논문의 심사자 선정,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
  - ㉡ 학술지 논문의 편집
  - ㉢ 기타 학술지 발간과 편집에 관한 사항
3.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

- ㉠ 편집위원 워크숍
- ㉡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준비
- ㉢ SCI(E) 및 SCOPUS 등재 준비
- ㉣ 논문 관련 상의 수상후보자 심의

#### 제 4 조 (회의)

위원회는 3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. 다만,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 5 조 (심사위원)

1.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분야별 편집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임한다.
2.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적합한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#### 제 6조 (심사규정)

1. 투고된 논문의 심사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2. 심의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, 출석이 곤란하여 대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원내 포함한다.

#### 제 7 조 (투고요령)

1. 논문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2. 심의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, 출석이 곤란하여 대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원내 포함한다.

#### 제 8 조 (논문게재)

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한다.

#### 제 9 조 (논문집 발행)

논문집 발행 회수는 연 4회로 하며 발행은 2,5,8,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
#### 제 10 조 (개정)

1.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2. 심의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, 출석이 곤란하여 대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원내 포함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이사회회의 인준을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.